##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차규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06

발의연월일: 2024. 8. 9.

발 의 자: 오기형·차규근·김남근

진성준 • 한창민 • 박민규

정춘생 · 김현정 · 강준현

김영환 • 허 영 • 박해철

박홍근 · 김재원 · 김준형

신장식 • 박선원 • 송재봉

이광희 • 문금주 • 박지혜

황명선 · 김 윤 · 복기왕

김남희 · 황운하 · 정진욱

조인철 · 최민희 · 주철현

의원(3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식가치는 유사 외국 상장회사의 경우에 비해 낮게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러한 현상을 두고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라는 말까지 사용되고 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상황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제기됨. 가령, 지배주주 자녀에 대한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부당한 합병비율을 부당하게 산정한 사례, 유망한 것으로 알려 진 상장회사의 사업을 분할한 후 그 자회사의 주권을 다시 주식시장에 상장한 사례, 특정 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망한 것으로 알려진 상장회사의 사업을 부실 계열회사와 분할합병하는 사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일정한 제도개선이 있었으나, 이를 편법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들도 밝혀졌음. 가령 주주제안권 행사가 주주총회일 6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점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일 6주 전 이후에 주주총회 개최를 통지함으로써 회사가 일반주주들의 주주제안권 행사를 봉쇄한 사례가 있었음. 그리고 3% 초과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지배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의결권제한을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나라 상장회사들의 저평가된 주식가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반주주들과 지배주주 사이의 이해상충을 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를 통해 일반주주들이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주요 안건에 관한 의결권 제한, 다중대표소송 요건, 주주총회 소집 통지, 이사 보수 결정과정 등에 관 하여 지배주주와 일반주주들의 이해상충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 도록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조항을 개편하고, 이로써 일반주주들이 지 배주주와 마찬가지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 함.

### 주요내용

- 가. 주주로 하여금 다른 주주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또한 부당하 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함(안 제331조제2항).
- 나. 주주들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앞서 충분한 토론과 숙의를 할 수 있 도록 주주총회 통지 기한을 현행 '2주 전'에서 '4주 전'으로 확대함 (안 제363조제1항, 제542조의4제1항).
- 다. 임시주주총회에 한하여 주주총회 3주 전까지 주주제안을 할 수 있 도록 함(안 제363조의2제1항).
- 라.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 1)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회사로 하여금 부당한 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된 보수를 환수하여야 할 의무를 명시함(안 제388조).
  - 2)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로서 보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보수위원회가 미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 보수 체계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542조의14).
- 마. 상장회사의 임원으로서 재직 중 일정한 업무상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상

장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와 별개로 미등기임 원의 역할을 하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 (안 제542조의5).

- 바.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있도록 함(안 제542조의6제7항).
- 사.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 권으로 집중투표를 청구할 경우 정관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아니한 상장회사가 집중투표 를 배제하는 정관변경을 하려는 경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542조의7).
- 아. 대규모 상장회사에 관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하여의결권을 제한함(안 제542조의12).
- 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소속 회사에 준하는 규모의 상장회사에 관하여, 서로 계열회사에 준하는 관계가 있는 회사와의 주식의 양도, 이전, 합병 및 분할 등 중요한 주주총회 의결사안에 대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 초과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을 제한함(안 제542조의15).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1조의 제목 중 "책임"을 "책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주는 다른 주주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3조제1항 중 "2주 전에"를 "4주 전에"로 한다.

제363조의2제1항 중 "6주 전에"를 "6주 전에(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하고 제363조제1항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3주 전에)"로 한다.

제388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을 "이사의 보수(상여금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받은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다)는"으로 하고, 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회사는 지속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업무 및 능력, 회사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사의 보수 가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된 경우, 경영부실의 책임범위에 상응하 는 보수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이사의 보수에 대하여 주주총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 구체적인 산정 근거를 설명하고 주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42조의4제1항 중 "2주 전에"를 "4주 전에"로 한다.

제542조의5의 제목 중 "선임방법"을 "선임 등"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상장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던 중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상장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거나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이사 또는 감사가 임기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 또는 감사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542조의6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에 관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도 또한 같다.

제542조의7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정할 수 없다.
- ②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한 상장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중투표선택상장회사"라 한다) 또는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가 있는 경우 제542조의6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제383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

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하고는 3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 ④ 집중투표선택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 ⑤ 집중투표선택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2제2항 중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을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감사위원회위원은"을 "이 경우 감사위원회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을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제7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542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42조의14(보수위원회)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한다.
  - 1. 이사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식,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의 심의·의결 가. 이사
    - 나.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 ·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
  - 3. 보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의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이사로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제388조제2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5(합병·분할 등에 관한 특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 1. 최대주주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주식의 교환
- 2.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주식의 이전
- 3. 제1호의 회사와 합병
- 4. 제1호의 회사와 분할합병
- 5. 분할
- 6.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처분 또는 양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31條(株主의 <u>責任)</u> 株主의 責	第331條(株主의 책임 등) ① (현
任은 그가 가진 株式의 引受價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額을 限度로 한다.	
<u>&lt;신 설&gt;</u>	② 주주는 다른 주주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여야 하며 부당
	하게 다른 주주의 이익을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주주총	제363조(소집의 통지) ①
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	
일의 <u>2주 전에</u> 각 주주에게 서	<u>4주 전에</u>
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	
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	
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	
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	
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	
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第363條의2(株主提案權) ① 議決	第363條의2(株主提案權) ①
權없는 株式을 제외한 發行株	
式總數의 100分의 3 이상에 해	
당하는 株式을 가진 株主는 이	

사에게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 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 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의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 서로 일정한 사항을 株主總會 의 目的事項으로 할 것을 提案 (이하 '株主提案'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第388條(理事의 報酬) 理事의 報 | 제388조(이사의 보수) ① 이사의 酬는 定款에 그 額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 議로 이를 定한다.

### <신 설>

<신 설>

6주 전에(정기주주총회를
제외하고 제363조제1항의 통지
가 있는 때에는 3주 전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

보수(상여금 기타 직무수행의 대가로서 받은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포함한다)는-----

- ② 회사는 지속적인 기업경영 이 가능하도록 이사의 업무 및 능력, 회사의 사정을 반영하여 이사의 보수를 정하여야 한다. 이사의 보수가 부당한 평가에 따라 지급된 경우, 경영부실의 책임범위에 상응하는 보수에 대하여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 수하여야 한다.
- ③ 회사는 최대주주, 주요주주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저 등) 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을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42조의5(이사·감사의 <u>선임방</u> 저 <u>법)</u>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제542조의4제2항에 따라 통지하거나 공고한 후보

	등	대통	령령,	으로	정하	는	자	에
	해대	강하는	: o)/	사의	보수	에	대	하
	여	주주	총회여	에서	대통	렁 렁	<u></u>	로
	<u>정</u>	하는	바에	따라	ユ	구체	적	인
	<u>산</u>	정 근	거를	설명	하고	. 주	주	의
	의 2	견을 -	들어ㅇ	냐 한1	<u> 구.</u>			
	542	2조의4	4(주주	^총회		소집	공	卫
	등)	1 -						- —
								- —
								- —
								- —
								- —
	<u>4</u> 주	- 전어	]					- —
								- —
		• (3) (	(혀해.	과 간	·음)			
1)		2조의:		•			서	<u>이</u>
	<u>이</u> 같		u 0	<u> </u>	-1-	1 1	止`	J
	E	ロノ						

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u>신</u> 설>

② 상장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하던 중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상장회사의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 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 2. 정역명의 집행유예를 선고받 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 <u>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u>
- 3.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은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 여금 명예회장·회장·사장·

<신 설>

<신 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 ⑥ (생 략)

⑦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 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 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406조의2(제324 조. 제408조의9. 제415조 및 제 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 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회사의 업 무를 집행하도록 하여서는 아 니 된다.

④ 이사 또는 감사가 임기 중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 또는 <u>감사의 자격을</u> 상실한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 에 관하여 6개월 전부터 계속 하여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 는 주식을 보유한 자도 또한 같다.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제542조의7(집중투표에 관한 특 례) ① 상장회사에 대하여 제3 례) ① 제542조의11제1항의 상 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82조의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상장회사가 정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

장회사는 제38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지 못 하도록 정할 수 없다.

②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하도록 정한 상장회사(이하 이 조에서 "집중투표선택상장회사"라 한다) 또는 제54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에서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가 있는 경우 제542조의6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제383조의 2에 따라 집중투표의 방법으로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있다.

③ 제2항의 청구는 주주총회일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직 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 이하

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 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 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상장회사가 주주총 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에 따 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하려 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도 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신 설>

제542조의8제5항에서 같다)의 6주 전까지(정기주주종회를 제 외하고는 3주 전까지) 서면 또

④ 집중투표선택상장회사가 정 관으로 집중투표를 배제하거나 그 배제된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 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 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⑤ 집중투표선택상장회사가 주 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제3항 에 따른 집중투표 배제에 관한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을 상정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항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 ② 제542조의11제1항의 <u>상장회</u> 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 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명(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 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 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 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 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 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 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 다.
-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 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의	정관	변경에	관한	의안과
별.	근로	상정하여	의결	<u> </u>
한I	<u> 구.</u>			
제542	조의12	2(감사위	원회의	구성
등)	1 (र्	현행과 깉	음)	
2				<u> 상장회</u>
사의	의 경우	· 감사위	원회위	원은 -
3				
				o]
경우	우 감시	나위원회9	위원은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 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 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 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 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 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5) • (6) (생략)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 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 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 다.

⑧ (생략)

<신 설>

(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그의 특수관계인,
⑤·⑥ (현행과 같음)
7
<u>&lt;후단 삭제&gt;</u>
⑧ (현행과 같음)

제542조의14(보수위원회) ① 제54 2조의11제1항의 상장회사는 다

응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보수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이사 보수의 결정 및 지급방 식,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보수지급 규정의 심의 · 의결가. 이사

나.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 장·회장·사장·부사장· 전무·상무·이사 기타 회 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 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 한 명칭을 사용하는 사람

- 3. 보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의 작성 및 공 시에 관한 사항
-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u> 는 사항
- ② 보수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 성하고, 위원회의 대표는 사외 이사로 한다.
- ③ 보수위원회는 제388조제2항 에 따라 임원의 보수체계를 마

<신 설>

<신 설>

<신 설>

런하여야 한다.

제542조의15(합병 · 분할 등에 관 한 특례) 자산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 장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 는 경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 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 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 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정관에서 이보다 낮은 주식 보 유비율을 정할 수 있다.

- 1. 최대주주의 사실상의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와 주식의 교환
- 2.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주식의 이전
- 3. 제1호의 회사와 합병
- 4. 제1호의 회사와 분할합병
- 5. 분할
- 6. 제1호의 회사에 대한 중요한

<u>영업</u>	또는	자산의	처분	또는
양도				